日本国福岡県議会と大韓民国慶尚南道議会との

友 好 交 流 協 定 書

日本国福岡県議会と大韓民国慶尚南道議会は、互恵平等の原則に基づき、相互理解や友好親善を深め、共に繁栄していくという共通認識に立って友好交流を推進するため、次のとおり合意する。

1. 両県・道議会は、友好協力増進のため、相互尊重や信頼に基づく緊密な友好関係を確立する。

2. 両県・道議会は、相互理解及び友好親善を図るため、相互に関心を持ち、人的交流、文化交流及び経済交流など、相互に有益と認められる各分野にわたって交流が活発に行われるよう努力する。

3. 両県・道議会は、両地域住民の両県・道間の友好交流に対する理解を深めるよう努力するとともに、民間分野の交流活動を促進させるため相互協力する。

4. 両県・道議会が本協定に基づき特に関心を持って交流に取り組む分野については、両議会の相互利益と平等に基づき、別に定めることができる。

5. 両県・道議会は、友好関係の更なる発展のため、本協定の改正について相互に要請し、協議することができる。

2025年 3月 28日

日　本　国	大　韓　民　国
福岡県議会議長	慶尚南道議会議長
香 原　勝 司	**崔　學　範**
香原 勝司	최 학 범

대한민국 경상남도의회와 일본국 후쿠오카현의회간의

우 호 교 류 협 정 서

대한민국 경상남도의회와 일본국 후쿠오카현의회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상호 이해와 우의 증진, 공동 번영에 인식을 같이하고 우호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양 도·현 의회는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우호 관계를 도모한다.

2. 양 도·현 의회는 상호이해 및 우호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관심을 가지고 인적교류, 문화교류 및 경제교류 등 상호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각 분야에 걸쳐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3. 양 도·현 의회는 양 지역 주민에 대하여 양 도·현간 우호 교류사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민간 분야의 교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4. 양 도·현 의회가 본 협정에 따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교류를 추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양 의회의 상호 이익과 평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양 도·현 의회는 우호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 본 협정의 개정에 대해 상호 요청하여 협의할 수 있다.

2025년 3월 28일

대　한　민　국	일　본　국
경상남도의회의장	후쿠오카현의회의장
최　학　범	**고하라 가츠지**
최 학 범	香原 勝司